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27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2
2. 부칙	11
IV . 입법의 재정영향	13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9조(벌칙) ① (생략)	제1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제>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생략)	제1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 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5조¹⁾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금융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할 수 있
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선박 및 해양시설 출입검사 실적은 다음과 같음.

<선박 출입검사 실적>

(단위: 척)

구 분	총계	해양수산부 (외항선)	해경(내항선)				
			소 계	유조선	화물선	어 선	기타선
'21년	3,876	1,643	2,233	482	143	702	906
'22년	4,158	1,657	2,501	501	135	845	1,020
'23년	4,583	1,943	2,640	475	143	864	1,158
'24년	4,856	2,147	2,709	581	198	813	1,117
'25년	5,184	2,141	3,043	654	255	862	127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해양시설 출입검사 실적>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해경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업
'21년	1,153	-	-	1,079	74
'22년	1,084	-	-	1,014	70
'23년	1,112	-	-	1,030	82
'24년	2,400	267	975	1,072	86
'25년	2,394	282	969	1,076	67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
제출·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³⁾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 제129조⁴⁾ 및 제132조⁵⁾의 적용을 받는 다른 행위와 비교

2)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4)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9. 12. 3.>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해 보았을 때,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다른 행위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132조 제2항제2호의3은 제36조의2제2항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조 제4항제6호의9는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7)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

-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게 한 자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삭제 <2023. 10. 24.>
 13.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5)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다른 보고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음.

한편, 현행법 제129조제2항의 다른 호(제2호부터 제14호)가 오염 방지설비 설치 기준 위반, 불법 적재, 미수검 선박 사용 등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실체적이고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5호의 ‘출입검사·보고요구 거부 등’은 이러한 실체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 이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5년간 검사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29조제2항제15호 벌칙 적용 건수가 0건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⁸⁾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범위반이 제한되었을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

으로 보임.

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은 종전 벌금형의 상한액과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원이므로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보고·조사·검사 불응' 행위 유형에 대한 과태료 액수의 통계적 최빈값과 중앙값은 모두 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500만원이 입법 실무상 가장 보편적인 제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⁹⁾

<유사입법례¹⁰⁾ 과태료 상한액>

법률	과태료 상한액
「동물보호법」	-보고·자료제출 거부: 100만원
「선원법」	-보고 및 서류 제출 거부: 200만원 -출입·검사 거부: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입·검사 거부: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	-검사 거부: 1천만원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0) [참고 2] 참조

출입·검사 또는 보고 요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유사입법례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음.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이되, 행위 주체가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일 때 제재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500만원의 벌금형을 500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해양수산부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3.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2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¹⁾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²⁾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³⁾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1)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3)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⁴⁾

문 의 처
02)6788-5427

1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

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참고 2

유사입법례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선원법」

제17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

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2조(검사·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